

度支部 建築所(1906-1910)의 기록물 관리와 현존 기록물에 관한 연구*

金 泰 雄

(群山大學校 史學科 專任講師)

1. 序 言

일제는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자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행정, 재정, 사법, 군사, 치안 등 식민통치의 근간을 장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와 함께 시설물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일제가 탁지부 산하에 建築所를 설치하여 건축·토목 사업을 전담케 한 것이 이 때문이었다.¹⁾

건축소는 1906년 9월 설치 이래 1910년 8월 관제가 폐지되는 시점까지 내각 각부 청사를 비롯하여 대한의원, 재판소, 경찰서, 재무청사, 세관

등 각종 건축물을 짓고 부산착평 등의 토목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건축소는 많은 건축 기록물을 생산하였다.²⁾

이러한 사정은 1910년 이후 건축소가 폐지되고 유사 부서가 신설되었어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이들 부서가 생산한 건축 기록물 일부가 정부 기록보존소에 소장되어 있다. 여기에는 圖面과 함께 150여 종의 建築文書綴이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이 공사설계서,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공사시방서, 설계변경추인공사, 공사예정가 예비조사서 등 건축 공사 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록물들이다.³⁾ 이런 기록물들은 공사도면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여러 정보를 담고 있다. 공사 과정, 공사 비용, 자재 조달, 인력 동원, 발주 기관과 도급업체의 역할 분담, 계약 절차, 설계와 시공의 관계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당시 건축의

*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목적기초연구(과제번호 R01-2000-000-00361-0)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1) 건축소의 활동, 조직, 인력과 그 역사적 성격에 관해서는 金泰中, “舊韓末 度支部 建築所의 組織과 事業에 관한 研究”, 釜山大學校 석사학위논문, 1982 ; 金泰中, “度支部 建築所 建築物의 樣式에 關한 考察”, 『慶南大工業技術研究所論文集』 9, 1991 ; 金純一, 舊韓國度支部 建築所에 關한 一考察”, 『釜山大工大研究報告』 27, 1985 ; 金泰中·金純一, “舊韓國時代 政府 工事機構의 職員에 關한 研究--度支部 建築所를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3, 1993 金泰中, “開港以後 總稅務司가 主管한 官營工事機構에 關한 研究--海關燈臺局·稅關工事部·建築所의 組織과 職員을 중심으로--”,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4 참조

2) 건축기록물(architectural records)은 흔히 건축사무소의 건축 기록물만 지칭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고객의 파일과 함께 정부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건축 기록물들(architectural document)도 포함되어야 한다. 즉 이들 기관은 건축 기능을 가지고 있거나 건축 기록물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 기록물들에는 도면, 모델, 사진과 함께 문서들이 있다. 본고에서 거론되는 건축 기록물은 건축소에서 생산한 기록물뿐더러 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도 지칭한다.
3) 政府記錄保存所, 『政府記錄保存文書 索引目錄』, 제1집 제7권, 1984

구체적인 공사 과정과 건축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건축소도 이러한 기록물들을 대량 생산했음이 분명하다. 일제 강점기 건축 행정의 전범이 건축소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소가 생산한 기록물들을 집중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현존 기록물들은 건축소가 추진한 사업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빈곤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다만 1909년에 건축소가 간행한 『建築所事業概要』와 『官報』에 일부 정리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건축소의 사업 개요 및 인적 구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며 더욱이 2차 자료에 불과한 결과 보고서로 최종 공정 단계를 중심으로 사업의 개요를 기술하고 있다. 물론 『건축소사업개요』에는 도면과 함께 양식, 외관, 배치 및 공사비 내역이 소개되어 있어 각 건축물의 유형, 재료 및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내용만으로 이 시기에 세워진 건축물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여기에는 공사의 구체적 배경, 예산 편성, 관련 부서의 업무 분장, 부지의 확보, 인허가 과정, 공사 방식 등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 및 설계, 시공부터 준공에 이르는 공정의 제반 단계 등에 대한 해명이 수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건축물은 그 시대의 기술, 재료, 문화 조류의 반영물이자 사회의 소산물이므로 건축내적 측면과 함께 건축 외적 측면을 적극 고려하여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소가 생산한 기록물의 실태를 정밀하게 추적하고 그 성격을 해명해야 한다. 아울러 일제의 건축기록물 관리 정책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 즉 건축부서가 기록물을 어떻게 생산하고 유통하고 보존하였는가에 관한 연구가 심화되면, 건축기록물을 발굴하고 활용하며 그 기록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실마리를 구할 수 있다. 이처럼 건축기록물 형성에 관한 연구는 건축사 연구에서 필요한 작업이다.

본고는 이런 작업의 하나로 건축소의 기록물 생산 과정과 보존 방식을 파악하고 현존 기록물을 발굴하여 재구성함으로써 건축 기록물의 가치를 제고하고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그리

하여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작업을 수행한다.

먼저 건축소 업무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건축소가 생산한 기록물 유형과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생산 기록물이 업무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듯이 업무는 생산 기록물의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작업을 소기대로 수행한다면, 기록물군의 구성과 내용을 추정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시기 건축 공사에서 官給工事が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 해당 건축 담당 조직이 생산한 공공 기록물의 비중이 더욱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의미는 적지 않다.

또한 건축소의 기록물 보존 방식을 파악함으로써 기록물들이 어떤 기준 아래 보존되거나 폐기되었는가를 해명하고자 한다. 특히 건축소가 우리 나라 최초로 기록물 보존 규정을 마련하여 건축기록물 관리에 적용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건축소의 기록물 보존 방식에 대한 검토는 일제의 건축 기록물 관리 정책의 단초를 해명함과 함께 강점 이후의 건축 기록물을 발굴하고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데 중요한 지표를 제공한다 하겠다.

끝으로 현재 규장각에 남아 있는 대한제국기 정부기록물철에서 건축 관련 기록물을 추출하고 체계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圖面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건축 활동의 실태에 한걸음 다가서고자 한다. 물론 현존 기록물은 매우 적을뿐더러 건축소가 생산한 원본 자체도 아니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물들을 생산기관별로 분류하고 공정에 맞추어 재배열한다면, 기록물의 활용 가치를 배가할 수 있다.

본고의 이러한 목표가 소기대로 이루어진다면 건축소 기록물의 내용과 성격을 해명할 수 있을 뿐더러 종전까지 취했던 圖面 위주의 접근 방식

4) 현재 건축소 관련 1차 기록물로 大韓醫院 및 南大門內 裁判所 館舍敷地 관련 도면과 함께 『議政府新築關係書類』와 『釜山營繕山及英國領事館山鑿坪拉海面埋築에 關한 件』만 남아 있어 건축소의 활동 전반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이는 분량도 문제이거나 건축소가 기안한 문서는 극히 일부에 그치고 대부분은 타부서에서 생산한 기안문이거나 건축소로부터 접수한 시행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타부서에서 생산한 문서에서 건축소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건축 기록물의 내용을 추적하면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다.

에서 벗어나 도면과 함께 관련 건축 기록물의 가치 및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근대 건축 기록물의 발굴·수집 및 체계적 정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작업이라 하겠다.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므로 업무에 관한 분석은 생산 기록물의 범주를 만들어 그 내용과 가치를 도출할 수 있다.

먼저 건축소의 분과별 업무는 <표 1>과 같다.

2. 建築所의 記錄物 生産과 保存

일제 통감부는 1906년 9월 건축소를 탁지부 산하에 설치하였다. 이는 이전의 營建都監과 달랐다. 후자가 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임시로 설치된 비상설 건축기구인 데 반해 전자는 상설 건축 전담기구였다. 그만큼 식민통치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각종 시설물의 건축이 절박했던 것이다. 그 결과 1909년 12월까지 500圓 이상의 공사건수는 300여 건을 훨씬 상회할 정도였다.⁵⁾ 건축소는 단기간에 많은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건축 기록물이 생산되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기록물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제가 이들 기록물을 어느 시점에 폐기했기 때문이다.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건축소의 업무를 면밀하게 분석하면 건축기록물군(architectural records group)의 구성과 내용을 추정할 수 있으며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있다.⁷⁾ 즉 건축소의 각종 건축 활동은 건축소 본연의 업무에 입각하여 전개되며 기록물 역시

5) 『건축소사업개요』, p. 91

비록 통계가 남아 있지 않아 공사 건수와 경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1909년과 1910년 건축소 경상비·임시비 예산액이 비슷한 것을 보면 1910년에도 1909년의 사업 추세를 이어간다고 추정된다. 예산액에 관해서는 李潤相, “1894~1910년 재정 제도와 운영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287-288 참조

6) 일제의 건축소 기록물 폐기 문제 관해서는 3장에서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7) 이에 관해서는 F. Gerald Ham, *Appraisal for Selection*, 제6장 Tools for Selection, SAA, 1993 ;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Architectural Records Section, *GUIDE TO THE ARCHIVAL CARE OF ARCHITECTURAL RECORDS 19th-20th CENTURIES*, 제4장 Arrangement of Architectural Records, ICA, 2000 참조

〈표 1〉 건축소의 사무 분장

建築課	設計系	건축용지의 측량과 지질재료가 등의 조사 건축공사의 계획과 설계 건축공사의 시방서 繪圖面(평면도) 및 공사예산서 조제 건축공사용 물품구매 또는 수선의 주문서와 예산 조제
	監督系	건축공사의 내역서 건축공사용 물품의 구매 또는 수선의 내역서 조사 건축공사의 시행과 감독, 건축공사용 물품의 납부 검사 건축공사용 물품의 취급, 건축공사용 직공인부의 용역 건축공사의 既濟부분과 준공 또는 건축공사용 물품의 기납 부분에 대한 調書 調製 건축공사 준공명세서 조제, 건축물 인계도면 조제
	營繕系	용지측량 재료가 등의 조사 계획과 설계 시방서 회도면 및 공비서 조제, 물품구매 또는 수리의 주문서와 예산서 조제 공사내역서 물품의 구매 또는 수리내역서 조사 공사의 시행과 감독, 공사와 측량용 직공 인부의 용역 준공명세서 조제 공사용 물품의 납부 검사, 공사용 물품의 취급 공사의 기성 부분과 준공 또는 구매물품의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서 조제 인계도면 조제
土木課	設計系	토지 및 해면의 측량과 지질재료 시가 등의 조사 토목공사의 계획 및 설계 토목공사의 시방서 회도면 및 공비예산 조제 토목공사용 물품구매 또는 수리의 주문서 및 예산서 조제
	監督系	토목공사의 내역서 건축공사용 물품의 구매 또는 수선의 내역서 조사 토목공사의 시행과 감독 건축공사용 물품의 납부 검사, 건축공사용 물품의 취급, 건축공사용 직공인부의 용역 건축공사의 既濟부분과 준공 또는 건축공사용 물품의 기납 부분에 대한 調書 調製 건축공사 준공명세서 조제 토목공사 인계도면 조제
	機械系	기계기구 설비의 계획과 설계 기계기구 설비의 시방서 회도면 및 예산서 조제 기계기구설비용 물품 및 선박구매 또는 수리의 주문서 및 예산서 조제 제2호 및 제3호의 내역서 조사, 선박기계기구설비 및 수리의 시행과 감독 선박기계기구 및 설비용 물품의 납부 검사 및 취급 전호의 기계부분 및 준공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조서 조제 기계기구 인계도면 조제
經理課	庶務系	장관의 관인과 소인의 보관, 기밀, 직원과 용인의 진퇴신분 문서의 접수 발송과 편찬보존, 전화의 관리 기타 청중 단속 타과계에 속하지 않은 사항
	調理系	공사와 운반 노력청부계약, 물건의 구매와 대차수선 및 매각 공사비의 예산과 결산, 경비의 예산 결산과 회계 토지조영물과 물품, 車馬 등의 차입

출 전 : 『건축소사업개요』, pp. 15-18

건축소는 이처럼 공사 계획, 도면의 설계, 시공, 물품의 조달 및 용역 관리, 감독, 준공 검사에 이르기까지 건축공정 전반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였다. 여기에는 설계, 시공 및 감독을 전담하는 기사, 기수 등이 50인을 넘을 정도였다.⁸⁾ 즉 건축소는 건축 예산, 건축 계획과 함께 건축 설계, 건축 시공까지도 직접 집행하였던 셈이다.

또한 건축과·토목과와 경리과는 기능상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 시공 도면과 조사서는 결재를 거친 후 경리과로 넘어가 소요 비용에 관한 수속을 거쳐야 했다. 또한 감독계는 경리과로부터 청구를 받은 뒤 이 청구서를 조사하여 경리과 경리계에 통보하였다.⁹⁾ 이처럼 건축소의 건축과와 토목과는 계획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을 주관함으로써 예산, 회계를 담당하는 경리과의 통제를 받아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건축소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건축 기록물을 생산하고 통제받아야 했다. 이러한 기록물은 各課 各系 업무의 상이에 따라 유형과 내용을 달리하였다. 이 점에서 <표 1>은 업무 내용과 함께 생산 기록물의 유형도 보여주고 있다.

건축과 설계계의 경우, 설계도면, 시방서와 함께 각종 조사서를 비롯하여 공사예산서, 물품구매 및 수선의 주문서 등을 작성하였다. 감독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건축과 감독계의 기록물과 비슷하였다. 기계계의 경우, 기계 기구 설비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조직으로 설비의 도면과 함께 시방서, 예산서, 검사조사서 등을 생산하였다.

토목과 설계계의 경우, 토목공사의 설계를 담당하는 조직이지만 그 업무가 건축과 설계계와 비슷하여 이와 유사한 기록물을 생산하였다. 감독계의 경우, 설계계에서 제출한 각종 조사서와 예산서 조사, 시공 감독과 인력 관리, 물품 검사 과정에서 기록물을 생산하였다. 특히 건축공사 준공 명세서와 인계도면을 작성하였다. 영선계의 경우, 설계계와 감독계 이외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도면을 비롯하여 각종 조사서, 수리

예산서, 검사서를 생산하였다.

경리과 서무계의 경우, 주로 인사와 함께 문서를 관리하는 조직으로 문서의 접수, 발송 및 편찬 과정에서 기록물을 생산하였으며 특히 건축 인사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였다. 조리계의 경우, 각종 청부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구매 매각하며 공사비의 예산과 결산을 담당하였으므로 공사 전반의 현황을 보여주는 기록물을 생산하였다.

일제 통감부는 이처럼 건축 활동을 주도적으로 직접 수행함으로써 도면과 함께 많은 건축 기록물을 생산하였다.

그 추이를 보면 <표 2>와 같다.

8) 『勅令』 제59호, 융희 2년(1908) '建築所官制'

9) 『건축소사업개요』, pp. 24-25

<표 2> 건축소 관련 文書件數

문서유형 \ 시기별		1907.3-6	1907.7-12	1908.1.-6	1908.6.12	1909.1-6	계
접수건수	훈령, 영달, 지령	1	3	31	66	30	131
	서무에 관한 서류	12	60	130	243	1,961	2,406
	공사에 관한 서류	67	119	411	1,395	2,060	4,052
	금전출납에 관한 서류	8	17	86	254	455	820
	재료 및 물품에 관한 서류	28	61	54	408	796	1,347
	자격증명파 증명원	5	13	36	54	251	359
	보고와 조사	20	75	222	957	675	1,949
	청구서 및 영수서	0	1	4	28	12	45
	복명서	0	1	4	28	12	45
	잡 건	6	10	63	100	306	485
	전 보	1	0	27	205	443	676
	합 계	190	403	1,196	3,958	8,785	14,532
	발송건수	상신, 청원, 보고	1	6	48	147	115
서무에 관한 서류		5	13	95	253	670	1,036
공사에 관한 서류		29	93	155	928	2,003	3,208
금전회계에 관한 서류		31	38	90	450	650	1,259
재료 및 물품에 관한 서류		6	39	34	152	679	910
승인서류		0	26	23	239	155	443
잡 건		1	3	26	45	86	161
전 보		0	1	40	83	518	642
합 계	73	219	511	2,297	4,876	7,976	
통 계	263	622	1,707	6,255	13,661	21,508	

출 전 : 『건축소사업개요』, pp. 222-223

1907년 3월부터 1909년 6월까지 발송되거나 접수된 문건은 무려 21,508건에 이른다.¹⁰⁾ 건수의 추이를 보면 최초 4개월은 73건에 불과했으나 1909년 1월부터 6월에 걸쳐 무려 4,876건에 달하고 있다. 건축소의 사업 규모가 확대 일로에 있음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공사에 관한 서류가 2,003건으로 해당 시기 기록물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부수 문서가 대량 생산되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문서를 종류별로 그 수량을 통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록물 관리가 생산 단계부터 유통, 보존 단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엄격한 기준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다.

10) 이 문서에 도면 등의 생산 보존 기록물을 포함한다면 그 수량은 훨씬 많았을 것이다.

일제는 이런 추세를 예측하여 건축 기록물의 보존과 폐기에 일찍부터 관심을 기울였다. 그것은 건축물의 사후 관리, 감독 책임 등으로 인해 여타 분야보다도 기록물의 보존과 폐기 구분이 필요함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 기능의 강화로 기록물을 다량 생산할뿐더러 이를 일정 기간에 보존해야 하는 현실에서 기록물 보존 규정이 필요했다.¹¹⁾

기록물별 보존 기한은 <표 3>과 같다.

11) 일본은 1880년대 歐美의 기록관리제도를 참조하여 문서 관리보존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하여 1888년에는 보존연한을 영구·20년·5년·1년으로 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安藤正人·青山英幸 編著, 『記録史料の管理と文書館』, 北海道大學圖書刊行會, p. 517 참조

<표 3> 건축소의 기록물 보존 기한

보존기간	대 상 기 록 물
무기한 보존	법규에 관한 중요 서류 공사의 계획에 관한 중요서류 및 繪圖面(평면도) 직영공사의 설계에 관한 중요서류 및 회도면 공사청부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 및 회도면 관유재산에 관한 서류 회계장부 문서원부
10년 보존	해면 및 해저측량에 관한 서류 부지측량 및 지질 또는 재료조사에 관한 서류 공사감독에 관한 서류 既濟부분 및 준공검사에 관한 서류 물건의 매매폐기에 관한 서류 새입세출에 관한 서류 문서 및 물건정리에 관한 장부 회계검사에 관한 증빙서류
2년 보존	인사에 관한 서류 토목공사관계서류 건축공사관계서류 영선공사관계서류 해면 및 해저측량관계서류 부지측량관계서류 기계기구관계서류 재질 또는 재료조사관계서류 관유재산관계서류 물건매매대차폐기 등 관계서류 회계장부 회계서류 문서 및 물품정리부 親書類

출 전 : 『건축소사업개요』, pp. 21-23

<표 3>은 보존 기한의 설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표 1> 건축소의 업무 분장과 대조하면, 양자가 매우 유사하고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건축소의 기록물 보존 기한은 기능별로 분류되어 있다 하겠다. 즉 계획, 설계, 계약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이 무기한 보존 기록물로 책정된 반면에 측량, 감독,

검사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과 기타 부수 서류는 각각 10년과 2년 보존 기록물로 책정되어 있다. 그 밖에 법률적·행정적·증빙적 가치를 고려하여 법규, 회계장부, 문서원부가 무기한 보존 기록물로 책정되어 있다.

다음 무기한 보존 기록물은 프로젝트별로 편철되었다. 건축소가 생산한 원본 기록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일제 강점기 건축 기록물철이 프로젝트별로 편철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시기 건축 기록물도 편철되어 있지 않나 추정된다.¹²⁾ 특히 대한제국 의정부에서 편철한 『議政府新築關係書類』가 프로젝트별로 정리되어 있어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¹³⁾

그러나 10년 보존 기록물과 2년 보존 기록물은 업무의 유사성으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중복되어 있다. 다만 문서철명을 각각 ‘관한 서류’와 ‘관계 서류’로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구분 방식으로 기록물의 생산자가 내용을 주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보존 기한을 달리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런 기록물은 생산되는 과정에서 이미 보존기간이 설정되었다. 그 결과 보존기간이 종료되면 주무계의 합의와 장관의 결재를 거쳐 폐기하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무기한 기록물도 보존 과정에서 이미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중도에 폐기하도록 규정하였다.¹⁴⁾

이러한 보존 기한 설정은 최초로 취해진 조치였다. 일제가 그만큼 건축 기록물이 건축물 유지 관리에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일찍부터 도입한 결과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 전통적인 문서 보존이 원본 편철보다는 편찬 방식을 취했던 데 반해 여기서는 원본 편철 방식을 취하는 가운데 원본의 보존 및 폐기 개념을 적용하였다 하겠다.¹⁵⁾

12) 가령 일제 강점기 건축 기록물철의 제목이 『京城裁判所法廷新築工事』, 『仁川府廳舍新築工事』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에 관해서는 주 3) 참조

13) 『議政府新築關係書類』(奎 20907)

14) 『건축소사업개요』, pp. 23

15) 이에 관해서는 拙稿, “甲午改革 前後 地方公文書管理의 변화”, 『奎章閣』 23, 2000 참조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건축 기록물이 극히 드물다. 오히려 우리 나라의 儀軌類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 예산, 작업 방식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대한제국기 조영물 의뢰의 상당수가 그것이다.¹⁶⁾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보존 방식이 편찬 위주의 방식이어서 이런 기록물이 원본은 아니지만 일정 기준에 따라 정리·편찬되어 남게 된 것이다. 이에 반해 건축소가 생산한 원본 기록물은 보존 및 폐기 기준이 매우 자의적일 가능성이 높아 어느 시점에 폐기된 것이 아닌가 한다.¹⁷⁾

건축소는 이처럼 탁지부 산하기관으로서 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감독,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직접 관장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건축 기록물을 생산하는 한편 문서보존규정을 두어 관리하였다.

3. 現存 記錄物의 실상과 특징

건축소는 보존 기한 규정을 두어 건축 기록물을 보존하고자 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건축소 기록물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다만 건축소 관련 1차 기록물로 大韓醫院 관련 도면¹⁸⁾ 및 남대문내 재판소 관사 부지 가옥평면도만이¹⁹⁾ 남아 있을 뿐이다. 그 밖에 대부분의 기록물은 타부서에서 생산한 기안문이거나 건축소로부터 접수한 시행문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기록물로 『議政府新築關係書類』와 『釜山營繕山及英國領事館山鑿平竝海面埋築에 관한 건』을 들 수 있다.²⁰⁾ 그 이유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대부분의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았나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존 기한 규정에 따른다면 이 역시 적절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다음 규장각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분실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는 근대 정부 기록류의 현황과 비교할 때 규장각에서 건축소 기록물만 폐기하거나 유실하였다고 간주하기에는 곤란하다.²¹⁾

그렇다면 규장각으로 이관되지 않고 조선총독부에서 이관받아 보존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²²⁾ 그리고 이 때 일제는 통치의 필요상 역사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적·법률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기하였다.²³⁾ 특히 보존 규정에서 무기한 보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소 기록물이 이처럼 폐기되었다는 사실은 일제가 보존 규정마저도 무시하고 무기한 기록물도 어느 시점에 완전 폐기하지 않았나 한다.

따라서 건축소가 생산한 기록물은 아니지만 타 부서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건축소 관련 기록물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가치를 검토하고자 한다. 비록 적은 양에 불과하지만 건축소 기록물

21)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대한제국 정부기록류는 11만 권을 상회한다(서울대학교 奎章閣, 『奎章閣要覽』, p. 10, 2000). 이들 기록물은 1911년 朝鮮總督府 取調局에서 규장각으로부터 인수한 기록물로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拙稿, “1910년대 前半 朝鮮總督府의 取調局, 參事官室과 ‘舊慣制度調査事業’”, 『奎章閣』 16, 1993 참조.

22) 건축소의 기록물이 조선총독부로 이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건축소가 비록 대한제국 정부 탁지부 산하기관이지만, 대한제국 정부의 소멸과 함께 조직의 기능이 정지되어 생산 기록물이 규장각 문서군으로 들어간 여타 정부기록류와 달리 기능이 조선총독부로 넘어감으로써 기록물도 조선총독부로 인계되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가령 대한제국기에 의병을 탄압하면서 생산한 『暴徒編冊』의 경우, 警務 기능이 조선총독부로 이어지면서 조선총독부 문서과로 인계되는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이 문제는 추후 규장각 기록물과 조선총독부 기록물에 대한 밀도있고 광범한 조사가 수반될 때 구체적으로 드러나리라 본다.

23) 이에 관해서는 金才淳, “일제의 공문서제도 장악과 운용의 실제”, 『韓國文化』 16, 1995 참조

이 문제는 추후에 정부기록보존소가 소장하고 있는 건축 관련 기록물과 대조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해명할 수 있으리라 본다.

16) 1902년에 편찬된 『中和殿營建都監儀軌』(奎 14345-14349, 奎 14914)의 경우, 圖說을 비롯하여 詔勅, 照會, 訓令, 報告 등 각종 공문서가 등재되어 있다. 이러한 공문서에서 건축공사의 배경,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통의 건축 기록물 정리 방식에 관해서는 별도로 다룰 예정이다.

17)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8) 『大韓醫院病室設計圖』(奎 25345)

19) 『南大門內裁判所官舍敷地取除家屋平面圖』(奎 20925)

20) 『釜山營繕山及英國領事館山鑿平竝海面埋築에 관한 件』(奎 21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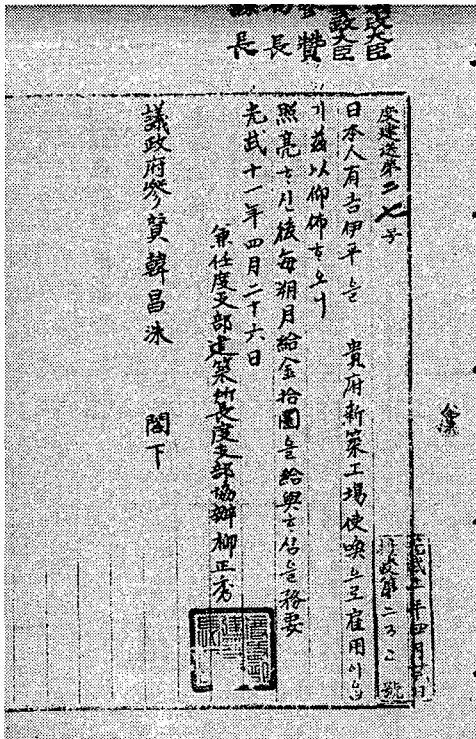
의 특징을 짐작하는데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되리라 본다.

먼저 의정부에서 건축소로부터 접수하여 淨寫한 문서를 통해 건축소의 문서 유형과 기안 방식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건축소에서 타부서에 발송한 문서에는 반드시 문서 번호가 부여되었다. <그림 1>에서 문서 번호가 '度建送 제27호'가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907년 4월 26일 현재 건축소가 이 문서를 생산하여 27번째로 발송하였다는 것이다. 건축소도 일반 부서와 마찬가지로 문서 작성과 관리에 유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건축소 관련 문서를 통해 건축소가 지은 건축물의 내용 및 공정 과정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그림 1> 건축소 관련 문서 1



출 전 : 『의정부신축공사관계서류』

의정부 청사의 경우이다. 이 건물은 『건축소사업개요』에 따르면 훗날 용도가 바뀌어 탁지부청사로 쓰였지만 본래 의정부청사 용도였고 위치와 배치의 내각 청사의 기능에 맞추어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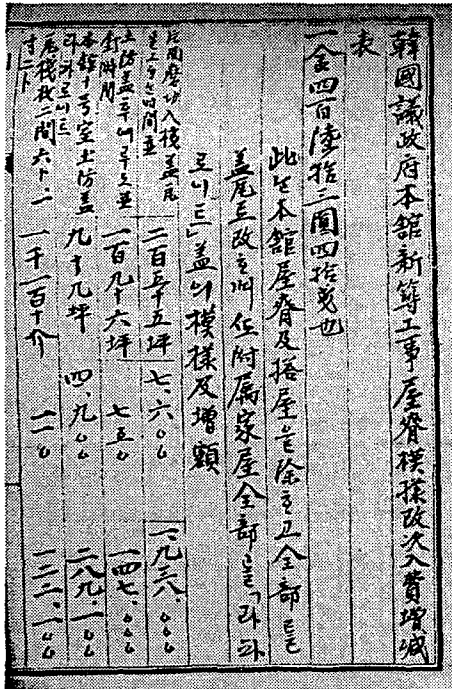
그런데 의정부가 청사 건립을 둘러싸고 탁지부 건축소로부터 접수한 뒤 淨寫한 문서들을 편철한 『의정부신축공사관계서류』에서는 『건축소사업개요』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여러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의정부 청사(준공 뒤에는 탁지부 청사로 쓰임)의 蓋屋은 원설계에 따르면 정면 원형 용마루를 제외하고는 전부 라파로이트 蓋紙였다. 이는 예산 절약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건축물이 영구적 구조임을 감안하여 비가 조금 와도 방수하지 못하는 라파로이트를 기와로 변경하여 지붕을 이었다.²⁵⁾ 아울러 부속 가옥은 원설계에 따르면 西鉛鍍板과 穴原商店制 瓦蓋로 덮으려 했다. 그러나 이 역시 雨被材料로는 라파로이트 상등품에 비해 떨어질 뿐더러 寒暑에 약하다고 판단하여 라파로이트로 변경하였다.²⁶⁾ 따라서 이 문서철에는 示方書와 增減 見積書가 첨부되어 있다. 이를 통해 설계 변경 과정과 자재 경비, 공사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그림 2>과 같이 용마루 개축 관련경비내역이라든가 물품조달과 대금내역, 청부업자의 신상 등이 간략하나마 기재되어 있다.

24) 『건축소사업개요』, p. 27.

25) 『의정부신축공사관계서류』

26) 『의정부신축공사관계서류』

<그림 2> 건축소 관련문서 2



출 전 : 『의정부신축공사관계서류』

이러한 사정은 다른 문서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各部通牒』에는 의정부 청사 공사에 참여한 도급업자가 보인다.²⁷⁾ 이에 따르면 도급업자 大倉組, 藤勝組, 長谷川組 間組, 岡田組, 清水組 등이 경쟁 입찰에 참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⁸⁾ 특히 재정고문 目賀田種太郎이 의정부 청사의 지붕 재료를 변경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도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탁지부 건축소에서 의정부에 물품 대금 및 감독원의 여비를 지급해 달라는 공문도 들어있다.²⁹⁾ 그 밖에 대한의원을 확장하는 공사에서 지주들이 지급받은 대금 내역이 나와 있다.³⁰⁾

이 문서철에 보이는 탁지부 건축소의 생산 문건은 <표 4>와 같다.

또한 의정부에서 기안한 문서를 편철한 『起案』에서 건축소 관련 기록물을 찾을 수 있다.³¹⁾ 여기에는 총리 관저에 비가 새고 있어 준공 기한을 연기하는 사정을 담고 있다.³²⁾ 그 밖에 경희루 수선을 독촉하여 준공케 해달라는 의정부의 기안문을 확인할 수 있다.³³⁾

다음 釜山鑿平工事의 경우이다. 이는 營繕山 및 英國領事館山을 착평하고 草梁停車場 船着場 사이의 해면을 매축하는 공사였다. 일제는 초량 부산 사이의 市街를 연결함으로써 일본 상인의 경제 침투와 무역 확대를 꾀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공사는 1907년 부산 거류 일본인들이 청원하면서 시작되었다. 『釜山營繕山及英國領事館山鑿平並海面埋築에 관한 건』은 『건축소사업개요』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공사 경위와 세부 사정을 담고 있다. 일본거류민단의 청원 과정, 탁지부의 보증을 통한 제일은행의 대출, 건축소의 집행 과정 등을 기재한 공문서가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³⁴⁾

따라서 이를 통해 공사를 둘러싼 일본거류민단의 청원 배경, 대한제국 정부의 조치, 제일은행의 공사 대금 대출 경위, 공정 단계 등을 단편적이나 파악할 수 있다.

건축소가 생산한 기록물들은 『건축소사업개요』에서 확인할 수 없는 여러 정보를 담고 있다. 즉 시공 단계에서 변경된 재료, 인력 관리, 공법, 회계 처리, 계약 내용, 수선 및 준공 검사 과정, 건물 신축을 둘러싼 타부서와 건축소의 관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건축소가 생산한 기록물 원본이 거의 현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시기 건축소가 조영한 건축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역사적 성격을 총체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행정 기관이 접수하거나 생산한 기록물들에서 건축 기록물을 발굴하고 출처기관별로 분류하여 그룹화(records group)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건축소의 경우, 대한제국 정부와 통감부가 생산한 공문서에서 원본이든 사본이든 건축소 관련 모든 기록물을 추출하여 건축소 레코드 그룹을 만든

27) 『各部通牒』 1(奎 17284), 광무 11년 3월 13일

28) 『각부통첩』 1, 광무 11년 3월 13일

29) 『각부통첩』 1, 광무 11년 5월 9일

30) 『각부통첩』 1, 융희 원년 8월 19일

31) 『起案』(奎 17746)

32) 『기안』 17, 융희 3년 7월 24일

33) 『기안』 16, 융희 원년 8월 19일

34) 『釜山營繕山及英國領事館山鑿平並海面埋築에 관한 건』

<표 4> 탁지부 건축소 생산 문건 일례

발송연월일	문서번호	문서형태	문서 내용
1907. 3. 13		공합	의정부신축 공사 6인경쟁 입찰
1907. 5. 19	탁건설32		물품 대금 및 공사 감독원의 예비 지급
1907. 8. 26		조회	대한의원 신축공사 준공 연기
1907. 9. 5	탁건설42		내각신축공사 정관은 기와, 부속건물은 라파로이트로 덮을 것
1907. 12. 23.	탁건설177		내각 청사 신축공사비 잔액 지급 요구
1907. 9. 17	탁건설48		내각 신축 공사 투입 자재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1907. 9. 20	탁건설58		내각 신축공사 사환사퇴로 장상기를 선임
1907. 9. 28		조회	재정고문이 정관을 기와로 덮을 것을 피력
1907. 8. 19	탁건설22		대한의원 확장 공사 부지 대금 지급
1907. 11. 9	탁건설109		의정부 건축공사 대금 속히 지급 요청
1908. 10. 31		통첩	인천세관 매축공사건의 관보 게재 요청
1908. 11. 4		통첩	건축소 물품구매입찰 광고건의 관보 게재 요청
1908. 11. 12		통첩	마산세관 잔교가설공사등의 관보게재 요청
1908. 11. 19	탁건설272		원산거류지 해벽축조공사청구 입찰광고 관보 게재 요청
1908. 12. 25	탁건설626	통첩	대구·군산공사 정부입찰 광고안의 관보게재 요청

출 전 : 『各部通牒』(奎 17824)

뒤 공사별 프로젝트별로 재분류하여 계획, 설계, 시공, 감독, 준공 검사 등 공정에 따라 재배열한다. 이처럼 생산기관별로 분류하여 공정에 맞추어 원본 질서를 복원하게 되면 이 시기 건축 공사의 구체적인 과정을 파악할 뿐만아니라 건축사적·사회사적 의미를 해명하는데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건축 아카이브즈 연구는 일천하다. 그것은 일제가 근대 기록물 보존 방식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기록보존방식과 단절시키는 한편 그들의 통치에 부합하여 단지 행정적, 법률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역사적 가치를 배제하는 보존 방식을 취함으로써 건축 기록물 자체가 빈곤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해방 이후 건축 기록물이 별로 남아 있지 않은 가운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복원 노력조차 뒷받침되지 않음으로써 그 가치와 활용도를 제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 아카이브즈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방법론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기초 연구가 진행될 때, 근대 건축사 연구가 자료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4. 結 語

일제 통감부가 1906년 9월 탁지부 산하에 설치한 建築所는 1910년 8월 폐지되는 시점까지 크고 작은 각종 공사를 담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건축 기록물이 생산되었다. 그러나 그 기록물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일제가 법률적·행정적 가치에 따라 기록물을 보존하거나 폐기함으로써 역사적 가치를 지닌 많은 건축 기록물이 폐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시기 건축물의 대부분이 건축소가 담당한 관급공사의 산물이며 이는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점한 이후 건축부서의 활동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건축소와 관련된 기록물에 대한 정밀한 탐사가 필요하다.

그 결과 건축소는 공사 계획부터 설계, 시공, 감독에 이르기까지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기록물을 생산하였음을 밝힐 수 있었다. 아울러 일제는 건축물의 유지 활용을 위해 건축분야에 처음으로 보존 폐기 개념을 적용하였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건축 기록물의 유실과 폐기로 말미암아 이런 제반 공정을 구체

적으로 파악할 수 없지만 타부서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통해 이런 제반 사정을 편린이나마 밝힐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시공 과정에서 원설계와 달리 자재가 변경되는 사정이라든가 청부 계약 및 인력 동원의 실태, 부지 확보, 자재 경비의 내역 등 도면에서 확인할 수 없는 다양한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후속 작업을 통해 일제 강점기에 생산된 도면을 발굴하고 생산기관별로 건축 기록물군(architectural records group)을 복원함으로써 기록물의 가치를 제고하고 활용 방안을 강구한다면 일제 강점기 건축물의 실상을 온전하게 파악하고 그 의미를 보다 객관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오늘날 근대 건축사 연구가 자료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건축 아카이브즈 연구의 실마리를 여는 또 하나의 길이다.

참고문헌

- 1 『議政府新築關係書類』(奎 20907)
- 2 『釜山營繕山及英國領事館山鑿平竝海面埋築에 관한 件』(奎 21018)
3. 建築所, 『建築所事業概要』 第1次, 1909
4. 政府記錄保存所, 『政府記錄保存文書 索引目錄』, 제1집 제7권, 1984
5. 金泰中, “舊韓末 度支部 建築所의 組織과 事業에 관한 研究”, 釜山大學校 석사학위논문, 1982
6. 金泰雄, “1910년대 前半 朝鮮總督府의 取調局, 參事官室과 ‘舊慣制度調査事業’”, 『奎章閣』 16, 1993
7. 金泰中, “開港以後 總稅務司가 主管한 官營工事機構에 관한 研究--海關燈臺局·稅關工事部·建築所의 組織과 職員을 중심으로--”,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4
8. 金才淳, “일제의 공문서제도 장악과 운용의 실재”, 『韓國文化』 16, 1995
9. 金泰雄, “甲午改革 前後 地方公文書管理의 변화”, 『奎章閣』 23, 2000
10. F. Gerald Ham, *Appraisal for Selection*, SAA, 1993
11.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Architectural Records Section, *GUIDE TO THE ARCHIVAL CARE OF ARCHITECTURAL RECORDS 19th-20th CENTURIES*, ICA, 2000

A Study on the Records Management and the Existing Architectural Archives of Architectural Bureau(建築所, 1906-1910) in Korea

Kim, Tae Woong
(Kun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rchitectural Bureau(建築所, Kunchukso) that Imperial Japan set up in the Dept. of Treasury (度支部, Takjibu) executed many construction works from Oct. 1906 to Aug. 1910. In the meantime, this bureau produced many architectural records. But they were hardly preserved. Because Imperial Japan disposed the architectural records which had the historical value in according to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criteria.

Nevertheless, it is important to inquiry precisely the architectural records considering that the buildings that Architectural Bureau made were the products of government initiated construction and its activities influenced those of similar architectural bureaus after 1910.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Architectural Bureau put through all processes from plan, design, execution to examination.

Second, Architectural Bureau were produced many architectural records which contained not only drawings but also various types of documents.

Third, Architectural Bureau applied the preservation method at the first time in order to control buildings. Therefore, we can verify many informations that the drawings didn't give by analyzing the architectural records.

In conclusion, we can establish the foundation that clarify the facts of buildings under the rule of Japan Imperialism and grasp the meanings if we raise the value of records and draw up the use plan by seeking new the architectural records and dividing them into the several groups on the production organizations.